

김정일 체제 기반 강화와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교육지책

김 종 일 북한연구소 감사

정치적 경제적 위기때마다 헌법을 개정해 온 북한정권은 지난 4월 또 다시 헌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베일에 가려 그 내용이 최근에 서야 밝혀졌다.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정치적 위기 대처로서 김정일의 독재 체재강화 및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와 경제적 난국타개책으로 3년(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근로 의욕저하, 기술저하, 국제경쟁력 저하) 3악(생활환경의 열악, 제품의 조악, 생산시설의 노후화)

의 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 여건에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다는 허황된 공산주의 혁명목표설정은 인민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심각한 통치상의 부담에서 탈피해 보려는 몸부림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들의 헌법조문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한 것은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서문에서 그들의 헌법이 김일성의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헌법이라고 명

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법제도하에서 조선노동당규약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이고 동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이 창건한 맑스-레닌주의 혁명당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노동당의 최종목표는 온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유일사상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에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한 것은 법리적으로 조선노동당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스스로 훼손한 꼴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목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급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모면해 보려는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로 보는 것이 맞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정, 개정 경위 및 내용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김 종 일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노동부장관 비서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부산, 대구 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 노동교육원 교수
북한법 강좌(저서)
(현)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제정공포된 「인민 민주주의 헌법」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은 그들의 역사관에 입각한 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반체국주의, 반봉건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다음단계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인민민주주의 시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과도기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이름 부쳤다.

그리고 그 이후 24년간 5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로 사회주의제도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고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특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집단소유(국가 협동

단체)로 바꾸었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실시됨으로서 사회주의 제도는 어느사회제도 보다 우월하다고 자평했다.

사회주의 헌법이 최초로 채택된지 20년이 지나며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이에 대비한 법적대응 조치가 절실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첫째로 1990년대에 들어 구쏘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가 줄줄이 붕괴되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외적 대응조치로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그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둘째로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바로잡아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법적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셋째로 김정일 후계 권력체제의 기반을 굳게 다져 장차 김정일체제에 대비하는 법적포석을 탄탄하게 깔아

놓을 필요가 절실했다.

9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일 체제 대비 조치

그래서 1992년 4월 9일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정일 체제에 대비한 사전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제1차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은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사전 법적대응으로 해석되는데 비해 제2차 사회주의 헌법개정은 김일성사망이라는 돌발적인 사태를 맞아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그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했고 그러기 위한 당면과제로 정치체제를 지키고 경제를 희생시키는 일이 급했다. 그래서 1998년 9월 5일 제 2차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이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2차 사회주의 헌법 개정 내용은 제3차 사회주의 헌법 개정

내용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코저한다.

▲정치적 내용

①김정일식 통치체제의 제도화는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군통수권을 장악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②김일성 유훈통치의 기본틀 유지는 김정일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되 본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영도체제의 기본 바탕 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일성 유훈이 북한의 지도적 지침으로 재확인되고 김일성유훈실천이 국정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③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강화하는 것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법적지위를 높였다.

④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대폭강화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내외적인 국가대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

되고 권한 또한 대폭강화 되었으며 따라서 동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했다.

⑤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개편하여 내각체제로 바꾸는 것은 국가주석과 함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 속했던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시켰으며 국가 정책집행을 위한 대책수립권한도 「내각」에 이관시켰다. 내각의 지위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고 전반적 국가 관리 기관이며 따라서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하는 지위로 했음

▲경제적 내용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키 위해서는 그들의 주체적 경제노선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부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없이는 체제고수는 물론이고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은 법적대응을 취했다.

①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종전의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사회단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②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바꾸어 그 범위를 넓혔다.

③외국법인이나 외국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했다.

④공민의 거주,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신설

했는데 이는 식량난 때문에 주민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워 부득히 인정하게 되었다.

제3차 사회주의 헌법개정 주요내용

지난 4월에 시행한 제3차 사회주의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정치적 위기 대처, 혁명목표변화로 경제적 괴리현상타개, 그리고 인권의 존중선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기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았던 주체사상에 새로이 선군사상까지 지도지침으로 추가했다.(제3조)

조 문	현 행	개정(요지)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지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지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둘째, 인권존중 구절을 선언적으로 신설했다. (제8조)

조 문	현 행	개정(요지)
제8조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끝 부분의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사이에 인권을 존중한다는 구절을 신설함.

셋째,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과 전반적 국방 관리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권한을 강화시켰고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격상시킴으로서 김정일의 절대 권력을 공식화했다.(제100조~103조)

조 문	현 행	개정(요지)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이다.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 기관으로 개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 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개정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의안제출권을 국방위원장 과 국방위원회에도 부여함
제103조	1.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 2.국방위원회 사업을 직접지도. 3.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4.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5.특사권 행사.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 선포

넷째, 실현성 없는 공허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하여 현실적 괴리감을 해소시키려했다.(29조, 40조, 43조)

조 문	현 행	개정(요지)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만 표기
제40조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을 가진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동조문의 끝부분의 공산주의를 삭제함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체책을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끝부분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는 구절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고쳐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함.

북한이 국가적으로 자기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어 왔던 주체사상에 새롭게 선군사상까지 추가시킨 것은 이를 통해 군사국가화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한 현실적 상황에서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고 살아남을 길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민이야 살던지 죽던지 주체사상으로 묶여 놓고 군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당·군·정 총괄하는 절대권력자 명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 확대한 것은 드러내 놓고 수령 절대적 독재국가임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통수권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어 군과 당의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번 헌법개정

을 통해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 군림함으로써 헌법상 당, 군, 정을 총괄하는 절대권력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제적 절박감과 통치상의 이념적 사상면에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정권이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취해왔으나 지금까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3년, 3저, 3악」이라는 경제적 궁핍의 틀을 면하지 못하여 인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 핵폐기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당하고 있는 처지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황되고 괴리감을 느껴 당장 굶주리고 있는 인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되어 통치상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일성 건국이념 직결된 '공산주의' 용어 삭제

그러나 둘째로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하에서 김일성의 건국이념과 직결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한 것은 인민경제의 궁핍이라는 국가운영상의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불가피한 통치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법제도상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법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조선노동당은 모든 근로인민들 가운데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로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조선노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김일성유일사상)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기초를 이어받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도 그 서문에서 그들의 헌법을 김일성의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까지 명문화 하고 있는데도 동헌법조문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은 조선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제3차 사회주의 헌법개정도 제1차, 제2차 사회주의 헌법개정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 체제를 다지고 뒷받침하기 위한 절박한 조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비록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하면서 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

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조선노동당규약이 살아있는 한 이를 공산주의의 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술상 부득이한 일보 후퇴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권존중 구절, 공허한 선언적 의미일 뿐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래전부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기구와 국제 인권단체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다. 그래서 유엔인권 위원회는 물론 유엔총회에서까지 여러 차례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국내문제라고 오히려 간섭 말라며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 공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부도덕한 국가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의식하여 북한 당국은 이번 헌법개정에서 제8조에 인권

을 존중한다는 구절을 넣어 눈가림 하려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정도 없는 실정이여서 공허한 선언적 의미 밖에 없다하겠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살필 사안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5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장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 출판, 집회는 물론이고 시위와 결사의 자유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앙의 자유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다를 바 없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이를 송두리째 몽갔 수 있는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인데 쉽게 말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와 국가, 당과 혁명이라는 전체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 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허울뿐인 전시물에 불과하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누구나 사는 곳을 마음대로 정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주, 여행의 자유를 1998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인민이 식량난 때문에 굶어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인정했고 그나마 완전히 자유를 인정한 게 아니라 여행 증명서 발급으로 대치하여 사실상 거주, 여행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질적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제도적 실상이 이러한데 이번 헌법개정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몇 자를 새로 넣었다고 해서 변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체제수호 위한 절박한 교육지책

이상에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 개정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제3차 사회주의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의 헌법개정도 제1차, 제2차 사회주의 헌법개정때처럼 위기에 처한 김정일 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북핵 폐기를 둘러싼 유엔안보리의 제재강화 등 정치적 위기,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처참한 인민경제생활, 그리고 인권유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부도덕한 국가인식 등 절대적위기를 맞아 북한정권은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을 앞세운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통치상 부담을 덜기 위해 그들이 신성시하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까지 훼손하며 그들의 헌법에서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까지 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군권독재통치 강화만으로는 국제사회와 맞서 그들의 체제를 지킬수도 없고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의 곤경을 회생시킬 수도 없을게 확실하다. 순리를 어겨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예부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 **北韓**